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449716(본소), 2024가단5090623(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용역비]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최인석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원

변론 종결2024. 10. 22.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8,293,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0,922,4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에서 C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3.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골프장 유희부지에 신축 중인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인테리어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금으로 85,8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2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기획설계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 제4조(업무방법) 제1항은 '피고는 성과품 납품시 Presentation이나 Report를 통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시 수정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검사 등) 제1항은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성과물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바. 원고는 위 마.항 규정에 따른 수정요구 없이 202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3. 7. 27.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관련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은, ① 주위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민법 제673조에서 정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①, ②, ③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성격이므로, 피고가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46,577,143원만 반환하면 된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1)에 의해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검수하여 인수한 부분에 한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기획설계단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단계의 용역 중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획설계도서 납품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0%인 5,720,000원, 합계 91,5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밀라노 출장 중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설치할 가구 및 조명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외 추가 업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업무 용역비 7,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전부 수행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액수는 8,585,72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 민법 제673조에서 정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인 85,8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아래 ① 내지 ⑥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144,111,000원)

① 기획설계도면의 납품을 완료하는데 지출된 직접 인건비 71,000,000원

② 실시설계 단계의 직접 인건비 5,600,000원

③ 가구 및 조명 선정 직접 인건비 17,500,000원

④ 마감재 선정 업무 직접 인건비 5,000,000원

⑤ 투시도 작성을 위하여 지출된 직접 경비 20,000,000원

⑥ 간접 경비 11,910,000원

(2) 위 가) ②의 밀라노 출장비용 7,220,000원

(3) 이 사건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 7,846,462원

나. 판단

1)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해제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 이 사건 2024. 8.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민법 제673조의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반환해야 할 돈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85,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 제20조 제1항에 의한 보수 지급 여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 제20조 제1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검수하여 인수한 부분에 한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인테리어 설계 수준이 너무 낮아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3. 5. 9. 피고의 1차 인테리어 설계 컨셉 디자인 제안보고를 받은 뒤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기획설계 프리젠테이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기획설계에 대한 수정요구도 없이 민법 제673조의 해제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를 원고가 검수하여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 제20조 제1항에 의한 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2 내지 5,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 '견적서'를 토대로 설계용역 대금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3. 5. 9. 1차 인테리어 설계 컨셉 디자인 제안보고를 하면서 이동식 가구 및 실내조명 디자인 컨셉 보고도 한 점,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기획설계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점, 당시 가구와 조명들을 배치한 투시도가 작성되고 마감재 샘플링이 진행된 점, 원고는 피고의 기획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 요구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해제한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기획설계(이동식 가구 및 실내조명, 마감재 포함)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다시 작성하여 쌍방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투시도로 다시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견적서 또한 그런 절차를 예정하고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등이 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는 실시설계의 10%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가 이행한 세대별 전기, 통신 및 소방 도면에 인테리어 설계 내용을 반영한 부분을 아래 ①항 직접 인건비 산정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아래 ① 내지 ⑦과

같이 합계 80,707,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기획설계도면의 납품을 완료하는데 지출된 직접 인건비

- 견적서 금액의 70%인 49,700,000원(=71,000,000원 x 0.7),

② 실시설계 단계의 직접 인건비 : 불인정

③ 가구 및 조명 선정 직접 인건비

- 견적서 금액의 28%인 7,000,000원(= 25,00,000원 x 0.28)

④ 마감재 선정 업무 직접 인건비

- 견적서 금액의 40%인 2,000,000원(= 5,000,000원 x 0.4)

⑤ 투시도 작성을 위하여 지출된 직접 경비

- 견적서 금액의 40%인 8,000,000원(=20,000,000원 x 0.4)

⑥ 간접 경비

- 위 ① 내지 ⑤ 금원 합계 66,700,000원의 10%인 6,670,000원

⑦ 부가가치세

- 위 ① 내지 ⑥ 금원 합계 73.370,000원의 10%인 7,337,000원

다) 밀라노 출장비용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밀라노 출장 중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설치할 가구 및 조명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외 추가 업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업무 용역비 7,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 및 조명 선정을 위한 비용이 인정된 이상 이와 별도로 밀라노 출장비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기대이익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의 총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6,000,000원인 점,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기업경영 분석결과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은 약

5.53%인 점, 이 외에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산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없는 점,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기대 이익을 51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5,807,000원(이미 지출한 비용 80,707,000원 +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기대이익 5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상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의 2024. 10. 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송달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85,800,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은 7,000원이 남게 된다.

3. 브랜딩 및 캐릭터 디자인 용역 관련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2) 을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 외에 CCC 및 ECC에 대한 브랜딩 및 캐릭터 디자인 용역(이하, '이 사건 브랜딩 용역'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의뢰한 점, 피고는 2023. 4. 10. 공간브랜딩 레퍼런스를 제안하였고, 2023. 5. 9. 캐릭터 디자인 방향성 제안, 2023. 5. 13. 패키지 디자인 레퍼런스 제안, 2023. 6. 19. 캐릭터 디자인을 제안하고 자료를 원고에게 보낸 점, 원고의 G 상무는 2023. 5. 26.

브랜딩 용역 계약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완료되었고, 업무진행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종결재 후 브랜딩 용역 계약서에 원고 대표이사 도장 날인을 하겠다고 한 점, 2023. 6. 13. 피고가 브랜딩 용역 계약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계약일정과 착수금 일정 확인을 요청하면서 현재 브랜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자 G 상무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답변한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브랜딩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브랜딩 용역의 중단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브랜딩 용역을 의뢰하면서 피고에게 브랜딩 용역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미루다가 이 사건 브랜딩 용역을 중단하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 사건 브랜딩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CCC를, 주식회사 F은 E CC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G 상무와 브랜딩 계약 체결을 협의한 점, 피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C CC 브랜딩 용역 관련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브랜딩 용역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피고가 수행한 업무 범위가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했던 최종 견적서의 업무 내용 중 11.5%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상당하는 17,545,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가 브랜딩 용역과 관련하여 이행한 용역 내용(을 9호증의 1 내지 4)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손해를 5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7,000(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관련 손해 7,000원 + 이 사건 브랜딩 용역 관련 손해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2.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전연숙

별지

1) 제20조(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① 갑(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피고)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검수하여 인수한 부분에 한하여 상호 협의하에 정산한다.